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2-88 |
|----------|-------|

제출년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 내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원활히 해결하고 주민 간 합의를 통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민관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별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 제4조)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12조)

- 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9조)
-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1조)
-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라. 특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제15조)

- 특별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13조~제14조)
- 협의회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마.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2. 8. 11. ~ 8. 31.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위원회 신설 타당
- 4)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 원안 동의
-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6) 제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2.9.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주민과의 합의를 통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각 동(洞)에 두는 마포구 민관상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수인 민원”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30인 이상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요구하는 민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나.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다.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라.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관한 사항

바.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사. 동별 민관상생위원회가 심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주민제안”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의견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사항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다. 일반 사회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마.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사무가 아닌 사항

제3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상생 및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에 민관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해당 동과 관련된 다수인 민원에 관한 사항

2. 해당 동과 관련된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해결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동 소재 직능단체의 장

2.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및 행정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다.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라.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마.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5.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역 현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회의가 두 개 이상의 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되는 동 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보존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동 민원관련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들의 해촉에 관하여는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특별협의회) ① 구청장은 민원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각 동에 특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동장과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동장으로 한다. 다만 동장이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민원 관련 팀장이 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의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협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9조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참고인 또는 전문가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조례 제13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9조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참고인 또는 전문가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소요됨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류희경 (☎ 3153-8303)